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2,302,976	12,669,089
일반회계	363,880,282	10,916,408
특별회계	58,422,694	1,752,681
공기업특별회계	37,203,864	1,116,116
상수도사업	8,859,506	265,785
하수도사업	28,344,358	850,331
기타특별회계	21,218,830	636,565
의료급여기금	1,537,881	46,136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210,001	6,30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85,836	2,575
농공지구조성	7,611,000	228,330
중소기업육성기금	5,390,000	161,7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095,630	32,86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520,000	15,600
주택사업	31,880	956
기반시설	230,100	6,903
수질개선관리	4,206,502	126,195
농업발전기금	300,000	9,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32,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